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25.6.12 시행 -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유치된 외국인투자 면적만큼 면적상한 초과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 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5.6.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봉석 (044-203-4420)
	지역경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선희 (044-203-4405)

참고 1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내용

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마련

→ (신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유치된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총 면적 범위에서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투자 및 투자면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구 지정 고려사항 구체화

※ 실제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작성(시·도)’ 및 ‘지정 검토(산업부·지방시대위)’ 과정에서 적용이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문구로 수정

○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후 합리적 기간 내 투자에 착수할 것

→ (개선) 투자 주체가 명확하고, 합리적 기간 내 이행 가능한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등 특구 내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

○ (현행) 앵커기업, 협력업체 등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집적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광역 지자체 내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

→ (개선) 특구 내 투자기업, 협력업체, 향후 추가 투자유치할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집적화가 가능할 것. 다만, 단일기업의 투자 부지인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정도의 대규모 투자일 것

○ (현행)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의 특구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정성·구체성, 필요성·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타당한 지역을 선정할 것

→ (개선)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의 특구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지방 투자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지정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구 신청에 타당한 지역을 선정할 것

③ 특구 조건부 지정 관련 규정 마련

→ (신설) 산업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도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지정조건 부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 2

기회발전특구 개요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 (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既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 (면적)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5km²(150만평), 도: 6.6km²(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 (지원내용) 세제·재정,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 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 ⑤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참고 3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